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05

발의연월일: 2021. 8. 30.

발 의 자:서영교·김교흥·김영배

김영호 · 김정호 · 민병덕

오영환 · 이동주 · 이해식

장철민 · 한병도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매입(수용) 방식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음.

공공매입(수용)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이전이 발생하므로 이 과정에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이연토록 하고 있음.

이에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 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여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임(안 제40 조의10제3항).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본다"를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 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 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 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건 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 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 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 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 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 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본다.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
	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
	<u>다</u>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